

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

의안
번호

302

제출년월일 : 97년 2월 일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농촌지도소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기구정원규정(대통령령)이 개정되어, 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지도소의 설치목적, 위치, 업무, 소장의 직급 등을 규정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(제11조제4항)

붙임 : 1.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
2. 기타 참고자료

제천시조례 제 호

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농촌지도소(이하 “지도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지도소는 제천시 서부동 142-2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·조정
2.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·지도
3. 농촌 생활개선사업
4. 농업경영 개선지도
5. 시설원예, 채소, 과수, 화훼, 특용·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
6.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
7. 농민교육 및 지도
8.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소장) ①지도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